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2,237,860	23,467,136
일반회계	706,140,843	21,184,225
특별회계	76,097,017	2,282,911
공기업특별회계	36,039,766	1,081,1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422,441	612,6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617,325	468,520
기타특별회계	40,057,251	1,201,7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14,899	180,4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01,620	84,04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41,165	10,23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42,823	28,285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162,803	124,88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70,686	8,121
도시개발특별회계	1,705,944	51,17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95,285	17,859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042,514	31,275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2,894,919	386,84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867,305	86,019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6,417,288	192,5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44,1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